

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(위원회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과잉행정을 방지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등에 대한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을 ‘행정제재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간’으로 정하고,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가 신고확인증을 반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(안 제89조 등).

II. 검토의견

- 안 제89조제2항은 사업장폐쇄명령을 받은 자로 하여금 신고확인증을 반납하게 하고 있으나, 언제 누구에게 반납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,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.
- 안 제90조제1항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행정제재처분이 “있는 날”부터 1년간 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「행정절차법」¹⁾상 처분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발생하므로 이를 “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”로 수정

1) 제15조(송달의 효력 발생) ①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.

할 필요가 있으며,

이를 언제부터 적용하는지에 대한 부칙 규정이 부존재하므로,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거나 지위를 승계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.

-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의견을 마련함.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제89조(사업장 폐쇄 등) ① (생략) ② <u>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제85조제4항에 따른 신고 확인증을 반납하여야 한다.</u>	제89조(사업장 폐쇄 등) ① (개정안과 같음) ② <u>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는 지체 없이 제85조제4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</u>
제90조(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 제89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그 <u>처분이</u> 있는 날부터 1	제90조(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</u> ----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년간 승계한다. 1. 제85조제2항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폐업신고 후 다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를 한 자 2. 제87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부 칙 <u><신 설></u>	----- 1. (개정안과 같음) 2. (개정안과 같음) 부 칙 <u>제3조(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위 승계에 관한 적용례)</u> <u>제9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5조제2항후단 또는 제86조제1항후단에 따른 폐업신고 후 다시 신고를 하거나 제87조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</u>

- 그 밖에 법문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일부 자구 수정을 하였음(주서본 참조).

(전문위원 최 기 도)